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일자 : 1995. 12.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 제 안 이 유

정부의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코자 향후 3년간('96~'98년) 주민세율을 인상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개정.

○ 제 요 록 자

-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할 세액 : 50,000원(안 제15조 제1항)
- 주민세 소득할 세율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인상(안 제15조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읍·면지역 : 1,000원

동지역 : 1,800원

나. 시내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 1. 1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세율) ①	균동할의 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세율) ①		
1. 개인 - 읍·면지역	: 1,000원	1. 개인		
동 지역	: 1,800원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읍·면		
		지역	: 1,000, 동지역	: 1,800원
		나. 시내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1.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2.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3.	100분의 10	